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2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제1호 수정
 -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정의 수정
-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8조 수정
 -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16조제1항 삭제
 -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
- 조례안 제27조 삭제
 -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묘지·납골시설·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”을 “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 및 장례식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”를 “제11조 별표1 및 제18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 및 제11조 등”을 “제10조”로, “제2조 및 제8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”를 “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한다.(단,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)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”을 “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”로 한다.

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장사시설"이라 함은 <u>묘지 · 납골시설 · 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</u>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4조(묘지 등의 수급계획)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<u>제3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·장기 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5조(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) ① 영 <u>제11조</u>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·철도·하천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묘지</u> <u>· 화장시설 · 봉안시설 ·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</u>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묘지 등의 수급계획) ① -----<u>제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) ① -----<u>제1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.

1. 2. (생략)

②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·철도·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. 다만,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로(군도이상의 도로)며, 하천은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을 말한다.

제6조(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)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·침수 등으로 인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

-----.

③ -----
-----제10조-----

-----제7조-----

-----.

제6조(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) -
-----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
제11호-----

하여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제7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6조(사용료 등)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(이하‘사용료 등’이라 한다)는 별표2와 같다. 단,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.(단,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)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수거 및 개장명령 등) ① (생략)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-----
제19조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사용료 등) ① -----

-----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수거 및 개장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
제14조 -----

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
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
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
한다.

③ (생략)

제25조(금지행위) 묘역 내에서는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
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
물을 훼손하는 행위
2.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
을 초래하는 행위
3.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
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
하는 행위
4.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
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
5.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
위
6.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
7. 고성방가, 난동, 음주 등 미풍
양속을 해하는 행위

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 한
것을 제외하고는 「장사등에관
한법률」을 준용한다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작 성 자 |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 |
| 연 락 처 | (033)330-2150 |

관계 법령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4. 생략
15. "장사시설"이란 묘지· 화장시설· 봉안시설· 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.
16. 생략

제5조(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)

- ① 생략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· 화장시설·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(需給)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⑥ 생략

제17조(묘지 등의 설치 제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· 화장시설·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 조성할 수 없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2. 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. 다만,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, 가족 및 종중· 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. 다만,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제19조(분묘의 설치기간)

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.

② ~ ⑤ 생략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사설묘지의 설치기준)

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, 분묘의 형태,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